

35. 예금(예치금 · 예탁금 · 인출금)

☐ 예금 청구(예비적 병합)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주위적으로 예금청구,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예금자가 은행 직원의 예금계약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그 예금자와 은행과의 예금계약 성립을 부인한 사례

예금자가 제3자를 통하여 체결한 예금계약이 보통 정규예금 금리보다 고액이고 보통예금임에도 일정 기간 인출할 수 없는 등 시중 은행에서 예금 유치를 위하여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예금자는 적어도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은행 직원의 표시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결국 그 예금자와 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금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예금자는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29850 판결)

☐ 예금 청구(예비적 병합)

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〇〇. 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소외 황〇〇이 피고 〇〇조합중앙회의 〇〇군 지부에서 20〇〇. 2. 17.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〇〇은행 구좌 20-10-000로 70,350,000원을 입금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위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타행송금거래 후 당일 영업시간 내에 송금의뢰은행에 의하여 그 송금 거래가 취소된 경우, 수취인의 예금채권 성립 여부

송금수취인인 예금주와 지급은행 사이에는 온라인에 의한 타행송금거래에 의하여 금원이 송금되는 경우 그 입금 처리가 완료한 때에 그 금원에 대한 예금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하되, 당일 영업시간 내에 송금의뢰은행에 의하여 취소 처리되는 경우에는 그 송금 거래가 명백한 오조작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예금계약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송금된 금원은 당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취소 처리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그 입금 처리가 완료된 때에 예금으로 성립한다.(서울지법 1997.4.4. 선고 96가합15331 판결)

☐ 예금 청구(예비적 병합)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유인자에게 38,000,000원, 원고 김세영에게 52,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〇〇.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제1차적으로 민법 제35조에 기한, 제2차적으로 민법 제756조에 기한 각 손해배상청구, 선택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임), 피고는 원고 유인자에게 38,000,000원, 원고 김세영에게 52,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 갑이 공동대표이사 병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위 금고가 을로

부터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 위 금고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인 갑이 을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예탁금으로 입금처리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당시 공동대표이사인 병의 개인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위 금원을 차용하면서도 외관상으로만 위 금원을 위 금고의 차입금으로 입금처리 하는 양 가장하여 을을 속이고 실제로는 차입금원장등 대장에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위 금고용차입금증서가 아닌 병 개인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을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갑의 개인적인 용통행위로서 위 금고의 차용행위로서는 무효라 하겠으나 그의 행위는 위 금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위 금고 대표이사의 직무범위내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의 처지에서도 위 금고와의 거래로 알고 있었던 것이므로 위 금고는 그 대표이사 갑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0.3.23. 선고 89다카555 판결)

☐ 정기에금반환 청구(예비적 병합)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김영일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5.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7.6%의, 그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최영우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7.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7.6%의, 그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김영일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2. 18.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최영우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 31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 이른바 수기식통장에 의해 거래한 예금주의 과실비율을 낮게 참작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과실상계의 적용비율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공평의 관념에 따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정상적인 은행예금의 거래형태를 잘 알 수 있었던 피해자들이 사채중 개인으로부터 정상적인 은행금리 이외에 별도의 선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예금계약을 가장하여 사채자금을 받으려는 은행직원에게 돈을 교부하였고, 그 선이자 내지 저축장려금을 은행점포 아닌 다방 등에서 은행직원도 아닌 사채중개인으로 부터 정기적으로 받았고, 거액을 예금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의 중요부분인 금액란은 빈칸으로 한 채 이를 창구직원에게 제출하면 금액란을 볼펜으로써 넣는 통상의 방법이 아닌 이른바 수기식통장을 교부받고, 예금을 할 때 암호를 사용하며, 이러한 예금이 그 은행의 한 지점에서만 가능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은행에 이를 확인하여 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면, 높은 금리만을 탐내어 비정상적이고도 위험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잘못을 이용하려 한 피해자들에게도 그로 인한 위험을 상당부분 감수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측면에서도 합당하리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들의 과실비율을 1할 정도로만 본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대법원 1989.9.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

☐ 예치금반환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439,209,497원 및 이에 대한 2016. 2. 3.부터 2016. 5. 29.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 투자신탁회사의 수익률보장약정의 효력 유무

투자신탁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자가 예치한 예탁금을 운용한 결과에 따른 손익을 고객에게 귀속시키는 수익증권을 판매함에 있어 일정률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하는 확약이 그와 같은 수익증권의 본질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증권투자신탁업법이 그와 같은 확약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고 투자신탁회사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투자자에게 원본보전 또는 이익보존을 위한 약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예탁금의 운용에 있어서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상 투자신탁회사의 역할에 차이가 있는 점 및 투자신탁회사의 상인성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확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

② 투자신탁회사의 영업부장의 수익률보장약정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

투자신탁회사의 영업부장이 고객유치를 위하여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수익보장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 행위는 투자신탁회사의 영업범위 내의 행위에 속하고 영업부장은 그 회사의 지배인으로서 회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회사를 대리할 재판상·재판 외의 포괄적인 권한이 있는 자이므로, 그 수익보장약정 행위는 영업부장의 대리권한의 범위 내에 속한다.(광주지법 1996. 12. 4. 선고 96가합 6402 판결 : 취소기각·상고)

☐ 위탁예치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4.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11%,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계약의 성질 및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본 경우

환매조건부 채권매매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채권매매대금조로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예금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고객이 증권회사의 지점장이나 그가 보낸 직원에게 환매조건부 채권매수 또는 매도를 위임하면서 금원을 제공 또는 인출하고 증권회사 직원이 입금액 또는 출금액을 확인한 후 환매조건부 채권매매대금이 입금 또는 출금되었다는 취지를 통장에 기재하여 준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입출금액 상당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1985.5.8. 84가합3816)

☐ 예탁금반환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11,301,374,7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투자신탁회사의 수익보장약정의 효력(무효)

증권투자신탁거래에서 발생하는 원본손실에 대한 수익보장약정은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위배되고, 금융시장에서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인천지법 1998.1. 선고 96가합17321 판결)

☐ 예탁금반환 청구(예비적 병합,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의 각 예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재의 각 예금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예탁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황○호에게 364,491,678원 및 이 중 104,000,000원에 대하여는 20○○. 4. 15.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30.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5. 16.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6.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90,491,678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9.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정○춘에게 402,337,913원 및 이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7.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337,91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의 매매거래위탁계약에서 증권회사가 약정과 달리 임의로 거래를

성립시킨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와 이 경우의 손해액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의 매매거래위탁계약에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수량, 가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 매매시기에 대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고객으로부터 사전승낙을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에도 증권회사의 피용자가 고객으로부터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받고도 임의로 주식을 거래한 경우 이는 위탁계약에 따른 권한의 범위를 넘는 것이고 위 거래는 그 고객에게 결과를 귀속시킬 수 없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위 고객으로서는 증권회사에 대하여 거래가 무효임을 주장하고 주식거래대금 상당액의 예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서울민사지법 1993.6.9. 선고 92가단86475 판결 : 확정)

☐ 예탁금반환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안○표, 박○수, 안○섭에게 각 20,906,500원, 원고 안○미에게 10,560,052원, 원고 안○희에게 19,532,585원, 원고 유○모에게 52,596,447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비조합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예탁행위가 유효한 이상 구 예금자보호법상(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예금에 해당하므로 예금보험공사는 위 조합의 지급정지로 예탁금을 지급받지 못한 비조합원들에게 예탁금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18940 판결)

☐ 예탁금반환 청구(예비적 병합,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00원 및 위 돈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6.부터, 60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9. 3.부터,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4.부터,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6.부터, 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5.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5리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 예금통장에 실명확인의 날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예금주가 실명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예금주가 수산업협동조합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며 실명확인을 요구하였다면, 그 조합의 사정으로 예금통장에 실명확인의 날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예금주가 실명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실명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면서 그 등록증에 기재된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를 사용하여 예금한 경우, 그 예금거래는 비실명거래인지 여부
 실명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면서 그 등록증에 기재된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를 사용하여 예금한 경우, 그 예금거래는 비실명거래이다.(광주지법 1996.5.23. 선고 95가합7378 판결)

㊦ 인출금반환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50,938,019원 및 이에 대하여 20〇〇. 11. 28.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은행에 대하여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예금주의 저축예금구좌에 예금주의 거래처로부터 일시보관을 위하여 계좌송금의 방법으로 입금된 금원을 예금채권으로 취급하여 대출금채권과 상계한 은행의 조치의 적부

예금이 계좌송금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 당좌개설은행과 수취인과의 사이에서는 예금계약 등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인 예금계약의 필요 없이 당좌개설은행의 일방적인 기장에 의하여 당연히 예금계약이 성립되고 불입금은 직접 수취인의 예금이 되며 이와 같이 일단 수취인의 예금으로 처리되는 때에는 입금의 경위나 그 입금을 한사람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그 수취인만이 유일한 예금채권자가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좌개설은행에 대하여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예금주의 저축예금구좌에 그 예금주의 거래처로부터 일시보관을 위하여 당좌송금의 방법으로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은행이 예금주의 이익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금채권으로 취급하여 은행의 대출금채권과 상계하더라도 이는 정당하고, 권리남용이 된다고 할 수 없다.(인천지법 1993.4.23. 선고 92가합1938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 정기에탁금반환 청구(예비적 병합)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 및 그중 별지 목록 ⑤항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④항 기재의 만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 8.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적용 여부 및 예탁금계

약에 기한 정기에탁금 반환청구사건에 있어서 예금주의 인장관리의 소홀과 입·출금 내역 조회의 불성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과실상계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지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므로, 예금주가 인장관리를 다소 소홀히 하였거나 입·출금 내역을 조회하여 보지 않음으로써 금융기관 직원의 불법행위가 용이하게 된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기에탁금 계약에 기한 정기에탁금 반환청구사건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정을 들어 금융기관의 채무액을 감경하거나 과실상계할 수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48801 판결)

☐ 정기에탁금반환 청구(예비적 병합)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그중 6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9.부터 2016. 11. 18.까지 연 1.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8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4.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1.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타인의 명의로 예치한 금원을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무단 인출하여 횡령한 경우, 실질적 예금주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타인의 명의로 예치한 금원을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무단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질적 예금주가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광주장흥 1997.7.22. 선고 97가합56 판결)